

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

[]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[]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
[]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

※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소유자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
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	건물명(설비명)	건축(설치)연도
	위치(소재지)	
	용도	
	구조	연면적
	건축물 수	세대 수

해체·제거 대상 []건축물 []설비 (작성방법 뒤쪽 참조)	위 치 (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)	종 류	재 질(또는 자재명)	면적(m ²) 또는 부피 (m ³) 또는 길이(m)
		분무재		
		내화피복재		
		천장재		
		지붕재		
		벽재 (벽체의 마감재)		
		바닥재		
		파이프 보온재		
		단열재		
		개스킷		
		기 타 (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)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
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: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, 건축자재의 목록·사진·성분분석표,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. ※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. 2.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: 건축물대장 사본 3.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: 공사계약서 사본(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) 4.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: 석면조사 결과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방법

"해체·제거 대상"란 중

가. 건축물,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[√] 표시를 합니다.

나. "위치"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(실)나 층수를 적되,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(동·층수·호수별)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.

※ 위치(설비)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

다. "종류"란에는 해체·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.

라. "재질"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.

※ 예시) 시멘트, 목재, 석고보드, 슬레이트, ○○텍스 등

마.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"없음"으로 적습니다.

공지사항

-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여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제출로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.
-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(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)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